

2024학년도 전기 대학원 법학과 학사안내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LAW

고려대학교 교가

조지훈 작사
윤이상 작곡

Moderato (♩ = c. 96)

mf

1. 북 악 산 기 습 예 우 독 솟 은 집 을 보 라 안
2. 자 유 통 위 하 역 우 물 결 치 는 가 습 이 역 정
3. 그 옥 한 수 불 은 우리 꿈 의 요 람 이 요 처

암 의 언 덕 예 파 처 나 는 빛 을 보 라 처
의 통 위 하 역 은 금 계 잡 은 의 소 님 이 다 태 의
님 은 별 판 은 우 리 힘 의 소 망 이 다 드 는 이

보 람 이 요 점 성 이 물 처 드 높 이 쌀 아 울 린 공 돈
정 나 가 는 이 들 려 서 받 아 아 득 히 우 러 르 는 이 정

ff

람 자 유 점 의 진 리 의 천 당 이 있 다
상 자 유 점 의 진 리 의 한 빛 이 있 다
신 자 유 점 의 진 리 의 은 길 이 있 다

후렴 *mf* *mp*

고 려 대 학 교 고 려 대 학 교 마 음 의 고 향

mf *ff*

고 려 대 학 교 고 려 대 학 교 영 원 히 빛 난 다

목 차

I. 조직 및 구성원	1
II. 2024학년도 학사일정	2
III. 학사안내	5
1. 수강신청	5
IV. 교과과정	6
1. 법학과 전공분야	6
2. 과정별 수료학점	6
3. 지도교수 지정과목	7
4. 연구지도학점	7
5. 종합시험	8
6. 외국어시험	8
7. 논문심사	9
V. 법학과 내규	10
VI. 자주하는 질문	14

I. 조직 및 구성원

1. 대학원 법학과 주요 보직교원

보직	교수명	구내번호	Email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	하명호	2873	hama@korea.ac.kr

2. 전공별 주임교수

세부전공	교수명	연구실	Email
국제법	강병근	1908	kangpk@korea.ac.kr
민법	최우진	1884	woo-jin@korea.ac.kr
민사소송법	김경옥	2880	kimkw@korea.ac.kr
법철학	윤재왕	2887	zwyoon@korea.ac.kr
사회법	박지순	2875	augsburger@korea.ac.kr
상법	김태진	1875	lawtjk@korea.ac.kr
행정법	이승훈	1886	shhead@korea.ac.kr
헌법	차진아	1878	jinahca@korea.ac.kr
형사법	홍영기	2888	hongyounggi@korea.ac.kr
지적재산권법	안효칠	1871	iplaw@korea.ac.kr
융합법학	김기창	1901	keechang@korea.ac.kr

3. 행정실 연락처

직위	성명	구내번호	Email
직원	김혜윤	1292	dj2224@korea.ac.kr

※ 교내 전화 연결 방법 : ☎ 02-3290- 구내 전화번호

II. 2024학년도 학사일정(아래 링크 접속)

<https://graduate.korea.ac.kr/academic/calendar.html>

※ 아래의 홈페이지들은 일주일에 최소 1~2회 방문하시어, 업로드 되는 공지들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대학원 법학과 홈페이지(<http://kulawschool.korea.ac.kr> > 메인화면 '일반대학원 > 공지사항 > 학사공지' 클릭)
2.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graduate.korea.ac.kr>)
3. 고려대학교 포털 (<http://portal.korea.ac.kr> > 일반공지사항 및 학사일정 참조)

III. 학사안내

1.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

1) 방 법

인터넷 수강신청 전용 URL(<https://sugang.korea.ac.kr/graduate>)에 접속하여 수강신청 단, 지도교수 지정과목은 포털로 지도교수 지정과목을 입력한 뒤,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함

※ 수강신청은 '포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며, 접속 시 필요한 학번은
2024년 2월 5일(월) 10시부터 위 수강신청 전용 URL 또는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수험번호로 확인 가능함(강의시간표 및 강의계획(안)도 위 URL에서 확인)

2) 신 청 : 2024년 2월 14일(수) 13:00 ~ 2월 16일(금) 12:00

3) 정 정 : 2024년 3월 6일(수) 09:00 ~ 3월 8일(금) 18:00

※ 개 강 : 2024년 3월 4일(월)

※ 고려대학교 포털시스템(KUPUID) 신청 및 사용 : 2024년 3월 4일(월)부터 가능

나.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1) 수강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 함.
- 2) 수강신청 후 본인이 신청한 과목과 동일하게 입력되었는지 수강신청 조회화면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내 정정하여야 함.
- 3)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학수번호를 정확히 확인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함.
- 4) 수강신청 시 교과목 입력 오류 등으로 잘못 신청하여 수강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 인정이 불가함.
- 5)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수강신청 및 정정 또는 과목포기신청은 할 수 없음.
- 6) 대학원은 재수강 제도가 없으며, 중복수강 한 과목은 학점 인정이 불가함.
(단, 과락(F)의 경우 중복수강 가능)
- 7) 어떠한 경우라도 동일 교과목 또는 유사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는 경우 학점 인정이 불가함.

교시		시간	구분
1교시	15분 휴식	09:00~10:15	75분 수업 모듈
2교시	15분 휴식	10:30~11:45	75분 수업 모듈
3교시	15분 휴식	12:00~13:15	75분 수업 모듈
4교시	15분 휴식	13:30~14:45	75분 수업 모듈
5교시	15분 휴식	15:00~16:15	75분 수업 모듈
6교시	15분 휴식	16:30~17:45	75분 수업 모듈
7교시	10분 휴식	18:00~18:50	50분 수업 모듈
8교시	10분 휴식	19:00~19:50	50분 수업 모듈
9교시	10분 휴식	20:00~20:50	50분 수업 모듈
10교시	10분 휴식	21:00~21:50	50분 수업 모듈

N. 교과과정

1. 법학과 전공분야

- 법철학 전공 (法哲學 / Philosophy of Law)
- 헌법 전공 (憲法 / Constitutional Law)
- 행정법 전공 (行政法 / Administrative Law)
- 국제법 (國際法 / International Law)
- 형사법 전공(刑事法 / Criminal Law)
- 민법 (民法 / Civil Law)
- 상법 전공 (商法 / Commercial Law)
- 사회법 전공 (社會法 / Labor Law)
- 민사소송법 전공 (民事訴訟法 / Civil Procedure)
- 지적재산권법 전공(知的財産權法 / Intellectual Property Law)
- 융합법학 전공(融合法學 / Interdisciplinary Jurisprudence)

2. 과정별 수료학점

과정	수업연한(단위: 년)	수료이수학점	
		교과학점	연구지도학점
석사	2	24(자기전공:12이상)	8
박사	2	36(자기전공:18이상)	8
석·박사 통합	4	54(자기전공:27이상)	16

※ 전공 교과학점은 매학기 13학점 까지 취득 가능함 (지도교수 지정과목 포함 16학점까지 취득 가능)

가. 석사과정

- 1) 학위취득을 위한 교과학점 24학점 중 12학점 이상을 대학원 법학과 자기 전공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함.
- 2) 연구지도학점(DKK500)은 교과학점 외에 매학기 2학점씩 4학기 간, 총 8학점을 취득하여야함.
- 3) 학위취득을 위한 교과학점 중 자기전공학점 외의 잔여학점(12학점)은 대학원 법학과 자기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도 되고 법학과 내 타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도 됨.

나. 박사과정

- 1) 학위취득을 위한 교과학점 36학점 중 18학점 이상을 대학원 법학과 자기 전공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함.
- 2) 연구지도학점(DKK500)은 교과학점 외에 매학기 2학점씩 4학기 간, 총 8학점을 취득하여야함.
- 3) 학위취득을 위한 교과학점 중 자기전공학점 외의 잔여학점(18학점)은 대학원 법학과 자기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도 되고 법학과 내 타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도 됨.

다. 석·박사 통합과정

- 1) 석사학위 없이 박사학위만을 취득하는 과정으로써, 학위 취득에 필요한 교과학점 54학점 중 27학점 이상을 대학원 법학과 자기 전공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함.
- 2) 연구지도학점(DKK500)은 교과학점 외에 매학기 2학점씩 8학기 간, 총 16학점을 취득하여야함.
- 3) 학위취득을 위한 교과학점 중 자기전공학점 외의 잔여학점(27학점)은 대학원 법학과 자기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도 되고 법학과 내 타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도 됨.

- 4) 석사과정 중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입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 또는 3학기 말에 진입 신청 가능.
(매 학기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석사과정 시 이수한 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중복 이수할 수 없음.

※ 기초공통과목(LAW1001~1036) 중 각 전공별 일반이론 교과목(LAW1001~1010) 1과목에 한 하여 자기전공 취득학점으로 포함 할 수 있음. 단, 본인 전공 일반이론 과목일 경우만 가능하며(예: '헌법'전공자가 '헌법일반이론'을 수강할 경우, 헌법 자기전공 취득학점으로 인정 됨), 지적재산권법의 경우 일반이론 교과목이 기초공통 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적재산권법 개설 과목(LAW6069 지적재산권일반이론)에 포함되어 있음. 형사법 전공의 경우 형법일반이론(LAW1005), 형사소송법일반이론(LAW1009) 과목 이수시 자기전공 학점으로 인정 됨

※ 법학과 내 개설과목이 아닌 타 학과 과목 및 교내전문대학원 학점교류를 통하여 이수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신청서를 수강 신청 정정기간까지 반드시 행정실로 제출해야 함.

※ 법학과에서 개설된 자기 전공 과목 외에는 자기 전공 과목으로 포함하지 않음.

【 각 세부전공별 학수번호 】

- ▶ LAW1001~1036 : 기초공통과목
- ▶ LAW1501~1531 : 법철학 전공
- ▶ LAW2001~2043 : 헌법전공
- ▶ LAW2501~2561 : 행정법전공
- ▶ LAW3001~3080 : 국제법전공
- ▶ LAW3501~3510 : 융합법학전공
- ▶ LAW4001~4047, LAW8001 ~ 8028 : 형사법전공
- ▶ LAW5001~5079 : 민법전공
- ▶ LAW6001~6167 : 상법 및 지적재산권법
(해당 학수번호 범위 내에 상법 및 지적재산권법 전공과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법 및 지적재산권법 전공자들은 수강신청 시 반드시 개설 전공을 확인한 후 수강신청을 진행하여야하시기 바랍니다.)
- ▶ LAW7001~7033 : 사회법전공
- ▶ LAW9001~9060 : 민사소송법전공

3. 지도교수 지정과목

가. 지도교수는 신입생에 대하여 법학 과목 중에서 지도교수 지정 과목을 지정할 수 있음.

나. 지도교수 지정과목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신입생 첫 학기 필수 서류 제출 기간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과목을 수료 전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지정과목을 지정받지 않은 학생도 지정과목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연구지도학점

수료에 필요한 필수학점으로 매 학기 2학점씩 취득하여야 함.

(‘연구지도학점’은 과정별 학위취득 ‘교과학점’과는 별도로 취득해야함)

가. 연구지도(DKK500) : 재학생 석/박사 1~4학기, 통합과정 1~8학기, 매 학기 2학점씩.

나. 연구지도(DKK600) : 수료연구생(석/박/통합과정 수료등록자)

※ 수료연구생 :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수료 후 매학기 소정의 “등록” 및 “수료연구지도”를 수강하고 있는 자.

5. 종합시험 (학위논문 제출자격 시험)

과정	응시자격		시험내용(필기시험)	시험시기
	학점이수	평점평균		
석사	12학점 이상	3.0 이상	각 전공별 종합시험 대상 교과목 중 3과목 선택	전기 : 3월 (신청접수 3월 초) 후기 : 9월 (신청접수 9월 초)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박사	21학점 이상	3.0 이상	각 전공별 종합시험 대상 교과목 중 4과목 선택	
석박사통합	30학점 이상	3.0 이상	각 전공별 종합시험 대상 교과목 중 4과목 선택	
공통	시험시간		각 과목당 60분	※매 학기 대학원 법학과 홈페이지 별 도공지
	배점 / 합격점		100점 / 70점 이상	
	합격과목 수		석사 3과목 / 박사, 석박사통합 4과목	

※ 각 전공별 종합시험 대상 교과목 등의 세부내용은 [법학과 내규] 참조.

※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종합시험을 구술시험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시험에 사용된 논문을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자격용 논문(SCIE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비자연계의 경우 등재후 보지도 가능)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단독 또는 공동연구의 주저자(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로 게재(acceptance letter 포함)한 자.(다만, 학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소속대학장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내규로 정한 논문게재와 동등 업적으로 자격요건을 대체할 수 있다)으로 중복 사용하여서는 안 됨. 세부내용은 [법학과 내 규] 참조.

6. 외국어시험 (학위논문 제출자격 시험)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은 각 학위과정의 제1차 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으며, 면제받고자 할 경우 공시된 절차에 의해 학위논문 제출 전까지 면제받아야 함.

과정	제1외국어	제2외국어	시험시기	
석사	영어 또는 제2외국어 (불, 독, 일, 중, 서, 노, 한문) 중 택1	없음	※ 매 학기 대학원 또는 국제어학원 홈페이지 별도 공지	
박사	영어	(불, 독, 일, 중, 서, 노, 한문) 중 택1		
석박사통합	영어	(불, 독, 일, 중, 서, 노, 한문) 중 택1		
외국인 전체	- 전 과정 모두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여야함 -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생은 한국어와 영어 모두 통과해야 함 (단, 영어가 자국어인 경우, 불, 독, 일, 중, 서, 노 중 택1)			
통과 방식	과목	방법		주관기관
	영어	필답고사	국제어학원	국제어학원 공지참조
		대체강좌		
		공인 성적 면제	대학원	대학원 공지 참조
	제2외국어	필답고사	대학원	매 학년도 1회
		대체강좌 수강	국제어학원	국제어학원 공지 참조
		공인성적표 대체	대학원	면제기준표 참조

* 제2외국어 응시학과 : 법,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일어문, 노어노문, 불어불문, 독어독문, 서어서문, 사, 사회, 언어, 철, 한국사, 비교문학비교문화협동과정, 영상문화학협동과정, 문화유산학협동과정(구 문화재학협동과정)

※ 외국어시험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장 제1절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또는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위취득(졸업) > 외국어시험] 참조.

7. 논문심사

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시험시기
	제출연한	학점이수	평점평균	자격시험	논문	
석사	4	교과: 24 연구지도: 8	3.0 이상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	전기 : 4월 후기 : 10월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매학기 대학원 홈페이지 별도공 지
박사	8	교과: 36 연구지도: 8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제2외국어 포함)	※ 아래 '다' 참조	
석박사 통합	10	교과: 54 연구지도: 16				
공통	학위청구논문 신청 시 반드시 재학 또는 수료연구(재학) 상태이어야 함 ※ 휴학생은 반드시 복학 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수료연구생 :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매학기 소정의 등록 및 수료연구지도를 수강하는 있는 자 ※ 2017학년도 일반대학원 신입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 온라인교육을 필수로 이수 하여야하며, 미이수 시 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이 충족되지 않음. ※ 2021학년도부터 논문심사 신청자는 연구윤리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가. 지도교수 지정과목 이수자일 경우, 해당과목 취득 또는 심사 신청 학기에 해당 과목 취득예정자이어야 함.
나. 제출연한은 본인의 입학년도로부터 산입해야 함.

다.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논문제출자격 중 하나로 SCIE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비자연계의 경우 등재후보지도 가능)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단독 또는 공동연구의 주저자(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로 게재 (acceptance letter 포함)한 자.(다만, 학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소속대학장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내규로 정한 논문게재와 동등 업적으로 자격요건을 대체할 수 있다)여야 함.
라. 연구 윤리교육 및 인권과 성평등 교육은 가급적 입학 후 첫 학기에 이수 권고함

※ 학위청구논문 제출 관련 세부내용(제출자격, 시기, 서류 등)은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장 제2절 '학위청구논문 심사'] 또는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위취득(졸업) > 학위청구논문] 참조

V. 법학과 내규

법학과 (Department of Law)

學科教育目的

본 대학원 법학과는 1905년 설립 이래로 한국법학교육의 정립에 선구적 역할을 다하였고, 민족발전을 이끌어 온 주역들의 산실로서 자리 잡아왔다. 특히 현실을 중시하며 더불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소중히 하는 지성인, 법이론과 법실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예비 법조인 및 법률 전문가, 정보화·국제화·다문화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울러 국제화·정보화·다문화 되어가는 사회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대학원 법학과는 국내의 경쟁력과 비교우위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속의 대학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學科專攻分野

法哲學 전공(Philosophy of Law)
憲法 전공(Constitutional Law)
行政法 전공(Administrative Law)
國際法 전공(International Law)
刑事法 전공(Criminal Law)
民法 전공(Civil Law)
商法 전공(Commercial Law)
社會法 전공(Labor Law)
民事訴訟法 전공(Civil Procedure)
知的財産權法 전공(Intellectual Property Law)
融合學法 전공(Interdisciplinary jurisprudence)

법학과 내규

2016. 10. 12 일부 개정
2018. 2. 19 전부 개정
2019. 7. 9. 일부 개정
2019. 11. 27. 일부 개정
2020. 12. 11. 일부 개정
2023. 3. 1. 일부 개정
2023. 9. 1. 일부 개정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칙 또는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위임하였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 ① 학위취득에 필요한 교과학점은 각 과정마다 아래와 같다.
1. 석사과정 : 24학점
2. 박사과정 : 36학점
3. 석·박사통합과정 : 54학점
- ② 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가운데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전공 과목 중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 ③ 연구지도 학점은 교과학점 외에 매 학기 2학점씩 취득하여야 한다.
- ④ 지도교수의 지시에 의하여 법학과 내 타 전공의 교과목을 취득한 경우에는 3학점 이내의 범위에서 학위 취득에 필요한 자기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이전에 자기 전공학점 인정을 위한 신청서를 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법학과 외의 타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자기전공 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에서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 다만 해당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이전에 학점인정을 위한 소정의 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예비교수자과정(CTL810)'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지도교수 신청)

- ① 신입생은 제1차 등록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까지 지도교수와 면담한 후, 지도교수, 학과주임의 확인을 받아 지도교수 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 ①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SCI급, SSCI급 또는 학교 규정에 따라 이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는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 지원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으로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의 취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교수 지정과목)

- ① 지도교수는 신입생에 대하여 학부 또는 대학원(박사과정 학생의 경우)의 법학 과목 중에서 지도교수

지정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 지정과목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까지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과목을 지정받지 않은 학생은 지정과목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시험)

① 학생은 [별표 1]의 종합시험 대상 교과목 중 자신의 전공과목에서 석사과정은 3과목, 박사과정은 4과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기시험 대상 교과목의 수는 각 전공별 10개 과목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종합시험 합격에 필요한 과목 수 이내로 응시과목을 신청서에 기재한 후 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종합시험의 시간은 각 과목당 60분으로 한다. 사전에 신청한 외국인 응시자에 대하여는 종합시험의 출제와 답안 작성을 영어로 할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⑤ 종합시험은 각 전공별로 문제은행을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문제의 수는 종합시험 대상 교과목당 15문제 내외로 한다.

⑥ 종합시험의 배점은 각 과목당 100점으로 하며, 합격점은 70점 이상이다. 이미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시험을 면제하고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의 신청이 있는 경우 종합시험을 해당 학술논문에 관련된 구술시험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SCI급, SSCI급 또는 학교 규정에 따라 이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는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게재한 학생

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서 발행하는 학술지 「Korea University Law Review」 또는 「The Asian Business Lawyer」에 학술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학생

3. 제1호와 제2호의 학술지가 아닌 기타 학술지에 학술논문을 2편 이상 게재한 학생

⑧ 제7항의 학술논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논문의 주제는 학생의 전공분야여야 한다. 단, 융합분야 등의 경우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허용될 수 있다.

2. 논문의 저자는 학생이 단독저자이어야 한다. 단, 전공별로 2인 이내 공동저자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완화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논문이 게재 또는 게재예정인 학술지의 발행일은 해당 대학원 과정 의 입학일 이후부터 구술시험 실시 학기의 첫 달(1학기 3월, 2학기 9월)의 말일 이내이어야 한다.

4. 제4조 제1항에서 요구되는 최소 1편의 논문과 동일한 논문이 아니어야 한다.

⑨ 종합시험을 구술시험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종합시험 신청기간에 구술시험을 신청하고 제7항 및 제8항을 충족하는 논문과 학술지 발행기관이 발급한 공식적인 논문게재증명서(게재예정인 경우 게재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종합시험 응시를 신청한 학생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⑪ 종합시험을 신청한 학생이 결시한 경우 직후 학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시한 경우 지도교수 승인을 포함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예외로 한다.

제7조 (교과운영)

① 기초공통과목 중 각 전공별 일반이론 교과목은 자기전공 취득학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기초공통과목 중 두 개 전공 이상에 관련되거나 전공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교과목을 강

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과주임 교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융합법학전공의 개설과목은 융합법학전공 학생만 수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형법전공과 형사소송법전공을 형사법전공으로 통합함.

-통합된 형사법전공의 종합시험 교과목 신설.

2. (경과조치) 통합된 형사법전공 종합시험 응시과목은 2023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생은 [별표1]의 개정 전 형법전공, 형사소송법전공 응시과목 내에서 응시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 제6조 8항 1호, 제6조 8항 2호, 제6조 8항 3호, 제6조 8항 4호, 제6조 10항, 제6조 11항

개정 : 제6조 1항의 [별표1], 제6조 7항, 제6조 8항, 제6조 9항

[별표1]

전공	교 과 목		비고
법철학	① 법학방법론(LAW1501), ② 자연법론(LAW1503), ③ 법사회학(LAW1502), ④ 법이념론(LAW1505), ⑤ 근현대법철학(LAW1508), ⑥ 법과시민사회론(LAW1527), ⑦ 법과정치(LAW1530), ⑧ 논증이론(LAW1517), ⑨ 법효력론(LAW1506)		
헌법	① 헌법해석론(LAW2018), ② 민주주의론(LAW2029), ③ 법치주의론(LAW2016), ④ 사회국가론(LAW2031), ⑤ 기본인권론 I (LAW2008), ⑥ 기본인권론 II(LAW2011), ⑦ 정부형태론(LAW2005), ⑧ 입법권론(LAW2004), ⑨ 사법권론(LAW2007), ⑩ 헌법재판제도론(LAW2013)		
행정법	행정법 계통	① 행정법일반이론(LAW1003), ② 행정작용법론(LAW2502), ③ 행정절차법(LAW2515), ④ 행정입법론(LAW2501), ⑤ 국가책임론(LAW2514), ⑥ 행정집행법(LAW2506), ⑦ 행정쟁송법(LAW2516)	
	세법계 통	① 세법일반이론(LAW2531), ② 소득세법(LAW2535), ③ 법인세법(LAW2534), ④ 소비세법(LAW2536),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LAW2537), ⑥ 국제조세법(LAW2538)	
국제법	① 국제법일반이론(LAW1004), ② 조약법(LAW3002), ③ 외교관계법(LAW3018), ④ 해양법(LAW3003), ⑤ 국가책임론(LAW3004), ⑥ 무력충돌법(LAW3016), ⑦ 국제상품무역법(LAW3046), ⑧ 국제서비스무역법(LAW3049), ⑨ WTO 분쟁해결제도(LAW3040)		①은 필수
형법	① 형법일반이론(LAW1005), ② 정범 및 공범론(LAW4006), ③ 형벌론(LAW4007), ④ 보안처분법(LAW4016), ⑤ 행형학(LAW4018), ⑥ 형사정책특수연구(LAW4019), ⑦ 경제형법연구(LAW4026), ⑧ 재산법론(LAW4029), ⑨ 죄형법정주의론(LAW4045)		2022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적용

민법	① 법률행위일반론(LAW5007), ② 시효제도론(LAW5004), ③ 물권변동론(LAW5009), ④ 질권·저당권론(LAW5014), ⑤ 매매계약론(LAW5019), ⑥ 대차계약론(LAW5022), ⑦ 손해배상론(LAW5020), ⑧ 혼인법일반이론(LAW5061), ⑨ 대리이론(LAW5005), ⑩ 상속법일반이론(LAW5040)	
상법	① 상행위법(LAW6001), ② 회사법(LAW6002), ③ 유가증권법(LAW6003), ④ 보험법(LAW6004), ⑤ 해상법(LAW6005), ⑥ 국제거래법(LAW6017), ⑦ 공정거래법(LAW6051), ⑧ 금융법특수문제연구(LAW6106)	
사회법	① 노동계약법론(LAW7001), ② 근로시간 및 휴식보호법(LAW7002), ③ 해고보호법론(LAW7003), ④ 사회보장법론(LAW7005), ⑤ 노동조합법론(LAW7006), ⑥ 단체협약법론(LAW7007), ⑦ 쟁의행위법론(LAW7008)	
형사소송법	① 형사소송법일반이론(LAW1009), ② 수사절차론(LAW8005), ③ 증거법론(LAW8006), ④ 상소제도론(LAW8010), ⑤ 소송구조론(LAW8015), ⑥ 강제처분론(LAW8018), ⑦ 기판력이론(LAW8026)	2022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적용
민사소송법	① 민사소송법일반이론(LAW1010), ② 소송물론(LAW9002), ③ 소송절차의 기본원칙(LAW9005), ④ 증거법일반이론(LAW9006), ⑤ 다수당사자소송론(LAW9011), ⑥ 복수청구소송론(LAW9012), ⑦ 민사집행법일반이론(LAW9014), ⑧ 파산법(LAW9030)	
지적재산권법	① 지적재산권일반이론(LAW6069), ② 상품화권(LAW6072), ③ 저작권판례연구(LAW6073), ④ 특허판례연구(LAW6074), ⑤ 상표판례연구(LAW6075), ⑥ 부정경쟁방지법판례연구(LAW6076), ⑦ 지적재산권과 법의 충돌(LAW6080)	
융합법학	■ 석사과정 신청 가능과목 : ① 한국법기초연구(LAW3501), ② 한국법심화연구(LAW3502), ③ 주제탐구세미나1(LAW3507) ■ 박사과정 신청 가능과목 : ① 한국법기초연구(LAW3501), ② 한국법심화연구(LAW3502), ③ 주제탐구세미나2(LAW3508), ④ 법학연구방법론2(LAW3504) ■ 석박통합과정 신청 가능과목 : ① 한국법기초연구(LAW3501), ② 한국법심화연구(LAW3502), ③ 주제탐구세미나1(LAW3507), ③ 주제탐구세미나2(LAW3508), ④ 법학연구방법론2(LAW3504)	
형사법	① 형법일반이론(LAW1005), ② 재산법론(LAW4029), ③ 형벌론(LAW4007), ④ 보안처분법(LAW4016), ⑤ 형사정책특수연구(LAW4019), ⑥ 죄형법정주의론(LAW4045), ⑦ 형사소송법 일반이론(LAW1009), ⑧ 수사절차론(LAW8005), ⑨ 증거법론(LAW8006), ⑩ 소송구조론(LAW8015)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법학과 개설과목 및 교수요목

고려대학교 대학원 요람 참조

▶ [고려대학교 포탈시스템(KUPID) > 지식관리 > "대학원 요람" 검색]

V. 자주하는 질문

※ 학사행정 관련 규정 등은 항상 변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기 관련 공지사항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적/장학/논문]

Q1. 신입생 첫 학기에 전공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첫 학기에는 전공변경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공변경은 2학기 학적변동 기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자기전공이 아닌 타 전공의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신청하여도 되나요?

A2. 지도교수님은 본인 전공의 교수님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Q3. 휴학 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자동으로 다음 학기 복학이 되는 것인가요?

A3. 아닙니다. 휴학 기간이 종료되고 복학 예정 학기일 경우, 반드시 학적 변동 기간에 복학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휴학 경과 제적' 처리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 자퇴도 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자퇴는 시스템 신청이 불가하며, 행정실로 원서 제출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Q5. 통장사본은 왜 제출하여야 하나요?

A5. 등록금 이월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등록 후 휴학을 신청하였을 경우 추후 환불 처리를 위하여 사전에 학적사항에 계좌번호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복학신청 전에 학적사항에 계좌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학적변동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도 계좌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Q6. 수료생도 일반휴학일 경우 휴학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A6. 수료생은 특별휴학처럼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ex.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등)이 아니라면 굳이 일반휴학을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7. 수료연구등록금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납부를 하여야 하나요?

A7. 수료연구등록금은 수료 이후 학교 시설을 재학생처럼 사용 예정이신 학기이거나, 논문을 제출하는 학기 등에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나, 그 외 학기에는 반드시 납부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8. 수료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시험, 외국어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여야 하나요?

A8.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은 수료 조건이 아닌 논문제출자격시험이므로 수료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료 조건은 정규 등록 학기 등록 여부(석박통합과정의 경우 단축 가능), 학과 내규 조건에 맞는 학점 이수, 지도교수 지정과목 이수 여부(면제일 경우 해당없음. 단, 면제일 경우도 반드시 지도교수 지정과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등을 확인 후 수료로 처리됩니다.

Q9. 지도교수 지정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도 수료가 가능한가요?

A9. 지도교수 지정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른 조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Q10. 수료는 유보가 가능한가요?

A10. 수료는 유보가 불가능합니다. 수료 조건을 충족한다면 자동으로 수료처리 됩니다.

Q11. 재학연한 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수료생의 경우 학적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A11. 재학연한 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학적은 '영구수료'로 변경됩니다.

Q12.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기간에 지도교수 신청이 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하나요?

A12. 지도교수 신청은 매 학기 취득하여야 하는 연구지도 학점(수료조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지도교수 신청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연구지도 학점을 취득하실 수 없게 되며, 연구지도 학점 취득을 위하여 추후 초과학기를 등록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지도교수 신청 기간 전에 미리 교수님들과 상담을 진행하신 후 사전 승인을 받으신 뒤, 신청 기간에 바로 신청을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13. 종합시험 구술시험에 사용했던 학술지 논문을 박사 논문 심사 신청을 위한 자격용 논문으로 중복 사용이 가능한가요?

A13. 중복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종합시험에 사용하였던 학술지 논문이 아닌, 별도의 학술지 논문에 관한 게재증명서를 논문심사 신청 시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Q14. 논문은 합격 전까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A14. 네, 신청 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재학연한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신청이 가능합니다.

Q15. 마지막 정규등록 재학 학기에 논문심사 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A15. 네, 가능합니다. 단, 논문제출자격시험 통과 및 필수 교육이 모두 이수되어 있어야 하며, 마지막 학기에 취득 예정인 학점이 모두 취득되었을 경우 수료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논문심사가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학점 취득이 되지 않을 경우 논문심사는 불합격 처리 됩니다.

Q16. 외국어 시험을 공인영어성적표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상시 제출이 가능한가요?

A16. 외국어 시험을 공인영어성적표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행정실(본부)에서 공지하는 특정 기간에 제출을 진행하여 합니다.

Q17. 학위기는 여러 번 발급이 가능한가요?

A17. 학위기는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단, 원스탑서비스센터에서 발급하는 학위증명서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18. 첫 학기에 바로 신청 가능한 학과 장학금이 있나요?

A18. 석사과정생의 경우, 국승육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승육 장학금 신청 공지는 1학기는 3월, 2학기는 9월 업데이트 됩니다. (연구조교, 교육조교 장학금은 학과행정실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행정실에서 선발됨) 그 외 본부 또는 외부에서 법학과행정실로 추천을 요청하는 장학금은 학과행정실 홈페이지 업데이트 또는 교수님들께 추천의뢰가 진행되며, 대학원본부에서 진행되는 장학금 신청 공지는 아래 순서대로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 공지/뉴스 > 공지사항

[교무/종합시험/기타]

Q1. 동대학원 석사과정 출신으로, 석사과정 재학 당시 이수하였던 교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수강신청할 수 있나요?

A1. 수강신청 할 수 없습니다. 동일교과목 또는 유사과목을 중복수강하는 경우 학점인정이 불가하며 삭제처리 됩니다.

Q2. 일반대학원 개설 교과목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2. KUPID > 수업 > 대학원 전공과목 > 상세검색의 '학년도', '학기', '대학원', '학과' 설정 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혹은 (<http://sugang.korea.ac.kr/graduate>)에서 대학원전공과목에서 ID, PW 관계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Q3. 수료이수학점 중, 연구지도학점은 무엇인가요?

A3. 수료에 필요한 필수학점으로서 과정별 학위취득인 교과학점과는 별도로 취득하여야 하는 학점입니다. 연구지도학점은 매학기 2학점씩 취득해야 하며 연구지도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연구지도는 매 학기 대학원 본부에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연구지도 학점은 기본적으로 수강신청 시 자동셋팅되오나, 수강신청 내역에 연구지도 학점이 신청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 일반대학원 및 교내 전문대학원 간의 학점교류 절차 및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A4-1. 절차 : 학점교류 신청은 먼저 지도교수님과 논의한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점교류 수강신청은 시스템으로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진행하시고 별도로 '학점교류수강신청서<교내전문대학원용>'는 지도교수님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수강신청 정정기간까지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A4-2. 신청기간 : 학점교류 수강신청 기간은 일반대학원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점교류수강신청서<교내전문대학원용>' 양식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통합 홈페이지' 내, 일반대학원 법학과 공지사항에 업로드 되는 교내학점교류 신청 안내 공지에 첨부 or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제양식'에서 확인 가능

Q5. 교내전문대학원 학점교류는 최대 몇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법학전문대학원 과목의 경우 매학기 2과목(3학점 전공 관련 과목)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본인과정 수료 학점의 2분의 1(석사 : 12학점, 박사 :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6. 학점인정신청서 제출기간은 언제인가요?

A6. 수강신청 정정기간까지 소속학과행정실에 지도교수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Q7. 종합시험 신청은 재학생만 가능한가요?

A7. 종합시험 신청은 재학생 및 수료생, 휴학생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8. 종합시험(필기) 신청할 때, 기존에 합격한 과목이 있지만 합격에 필요한 과목 수 이상으로 신청을 해도 무방한가요?

A8. 종합시험(필기)은 반드시 종합시험 합격에 필요한 과목 수 이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석사과정의 경우 합격 기준이 3과목으로 기존에 2과목을 합격한 상태이고, 나머지 1과목이 남은 상태라면 해당 학기 종합시험에는 남은 1과목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합격했던 교과목을 다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각 전공별 종합시험 대상 교과목 등의 세부내용은 법학과 내규 별표1을 확인해주세요.

Q9. 종합시험 대체 구술시험을 신청할 때, 신청하고자 하는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등재지인지 혹은 등재후보지 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9. 한국학술지인용색인(www.kci.go.kr)로 접속하시어 해당 논문의 제목을 검색하시면 등재지 또는 등재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0. 소속학과행정실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신입생 신청서의 학과주임교수님 날인은 어떻게 받나요?

A10. 학과주임 교수님 날인은 행정실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Q11. 학생증 발급 및 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11. 학과 행정실에서는 학생증 및 증명서 발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스탑서비스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탑서비스센터

-인문사회계 : 중앙광장 지하 1층 (02-3290-1142, 1144)

-자연계 : 하나스퀘어 지하 1층 (02-3290-4090)

-세종캠퍼스 : 공공정책관(구 인문관) (044-860-1088, 1089)